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53호 2021. 11. 18.(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322호 소하천의(구역 및 예정지) 지정(변경)에 및 지형도면 고시 - 1
- 사천시 고시 제32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 사항 고시 -- 5
- 사천시 고시 제32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 사항 고시 -- 6
- 사천시 고시 제32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 7
- 사천시 고시 제32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 8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1448호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9
- 사천시 공고 제1449호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13
- 사천시 공고 제1451호 사천시 정보공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17
- 사천시 공고 제1454호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31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 753 호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6. 11.>

소하천의(구역 및 예정지) 지정(변경)에 및 지형도면 고시

사천시 고시 제 2021 - 322호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소하천(구역 및 예정지)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년 11 월 18 일

사 천 시 장 (직인)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지정(변경) 사유
		시점		종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사천강	예수천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621-11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621-11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595-1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595-1	903	916	사천시 도시관리 계획에 따른 소하천구역 변경

	지번 및 지목	면적(m ²)		결정(변경) 사유
		당초	변경	
소하천구역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827 외 22필지	8,459	4,967	사천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소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예정지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595-1 외 44필지	4,688	12,576	

첨부서류: 1.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사

2. 해당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소하천구역으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사(변경)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주소	성명
예수천	사천	정동	예수	827	구	12,174	1,655		농림축산식품부
예수천	사천	정동	예수	626-5	답	2,421	12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1054-2, 104-1404	김○식
예수천	사천	정동	예수	830-5	구	5,283	1,018		농림축산식품부
예수천	사천	정동	예수	360-7	전	548	54		사천시
예수천	사천	정동	예수	825-2	도	1,479	234		국토교통부
예수천	사천	정동	예수	665-7	답	2,638	29	162	김○국
예수천	사천	정동	예수	665-6	답	494	7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로98, 가-305	강○옥
예수천	사천	정동	예수	665-5	답	608	7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주길41-15, 101-301	송○길
예수천	사천	정동	예수	665-4	답	1,992	22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223번길 49	김○권
예수천	사천	정동	예수	665-2	답	3,264	25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503, 702호	이○자
예수천	사천	정동	예수	665-1	답	1,216	11	경남 사천시 정동면 읍동길27, 103-1006	신○수
예수천	사천	정동	예수	626-7	답	1,473	11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반룡2길 110	신○희
예수천	사천	정동	예수	626-6	답	2,036	39	경상남도 진주시 새평거로30, 111-2802	이○승
예수천	사천	정동	예수	626-8	답	330	10	진주시 칠암동 518-6 경남빌라 902호	이○자
예수천	사천	정동	예수	360-3	도	79	2		사천시
예수천	사천	정동	예수	산24-11	임	131	5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69, 202동 402호	김○진
예수천	사천	정동	예수	332	전	149	64		사천시
예수천	사천	정동	예수	산24-34	임	275	3	경상남도 진주시 총의로 67, 503동 103호	박○구
예수천	사천	정동	예수	330-1	답	60	16		사천시
예수천	사천	정동	예수	330-2	답	241	188		사천시
예수천	사천	정동	예수	331	답	53	34	사천읍 평화동 11-2	김○조
예수천	사천	정동	예수	329-6	도	93	24		국토교통부
예수천	사천	정동	예수	328-3	전	79	22		사천시
합 계						37,116	3,492		

소하천 예정지의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사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주소	성명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595-1	답	709	100		사천시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595-16	답	854	141		사천시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595-35	공	18,689	5,803		사천시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595-8	답	176	102		사천시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827	구	12,174	989		농림축산식품부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19-4	답	2,476	35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698	김○자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19-6	답	2,977	46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698	김○자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4-1	답	1,964	264	사천시 사천읍 중선1길 24	조○숙 외 1인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2-4	도	601	65		농림축산식품부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2-3	답	1,825	159	212	양○근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2-2	답	1,702	114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279	김○곤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2-7	답	132	133		사천시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2-1	답	1,232	123	사천시 곤명면 곤수로 394	이○섭 외 2인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2-6	답	767	620		사천시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1-1	답	2,225	89	사천시 정동면 바느실길 271	최○자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1-13	답	330	329		사천시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1-2	답	2,519	134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514	김○숙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1-14	답	520	402		사천시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1-3	답	2,396	129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1517	장○연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1-15	답	594	418		사천시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1-4	답	1,307	61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 97, 106동 1202호	김○섭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1-16	답	458	249		사천시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1-5	답	1,563	42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561-2	유○택 외 3인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1-17	답	496	322		사천시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1-18	답	267	199		사천시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1-19	답	200	64		사천시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1-20	답	553	70		사천시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1-21	답	1,188	22		사천시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주소	성명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1-22	답	95	11		사천시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1-10	답	329	26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18길22, 103-1604	전○희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1-11	답	1,149	54	사천군 사천읍 정의동 386	신○생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6-5	답	2,421	84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1054-2, 104-1404	김○식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833	도	1,736	79		국토교통부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830-5	구	5,283	107		농림축산식품부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6-4	답	2,668	172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용당길 71-16	강○열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6-3	답	864	65	진주시 이현동 8-1, 707동 406호	하○룡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6-2	답	1,768	95	죽림동 747	김○돌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6-1	답	2,142	88	서울 강서구 방화동 597 우촌연립 나-104	이○순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5-2	답	1,589	89	경남 사천시 사남면 월성1길89, 108-1403	정○안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5-1	답	1,336	134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주문길 417-18	이○근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624-2	답	1,421	192	김해시 삼방동 227-9 다세대 202호	강○갑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702	도	2,579	7		농림축산식품부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359-1	전	566	83	경남 사천시 정동면 사천강1길11, 102-1010	송○희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360	전	133	47	경남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12-1, 103-205	김○미
예수천 예정지	사천	정동	예수	360-7	전	548	19		사천시
합 계						87,521	12,576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32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11. 18.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21-9호 (2021. 8. 27.)
2.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장
 - 주 소 : 진주지 내동면 삼계로 413(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
3. 공사 내용
 - 수위관측을 위한 연결관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741번지선
5.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 2021. 11. 11.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32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11. 18.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21-3호 (2021. 4. 12.)
2.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3. 공사 내용
 - 사천항공 국가산단(2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위한 지질조사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산3-1~사남면 방지리 741번지선
5.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 2021. 11. 11.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32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11. 18.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 : 제2021- 13호
2. 점용·사용 승인 연월일 : 2021년 11월 9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선박접안용 부잔교 설치
4. 점용·사용의 장소
 - 사천시 마도동 산15-3번지선 일원
5. 점용·사용의 면적 : 1,317.5㎡(직접: 111.9, 간접:1,205.6)
6. 점용·사용의 기간 : 2021. 11. 9. ~2036. 11. 8.
7. 점용·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사천시장(도시재생과)
 - 나.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32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11. 18.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 : 제2021- 14호
2. 점용·사용 승인 연월일 : 2021년 11월 9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해안 데크로드 및 부잔교 설치
4. 점용·사용의 장소
 -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205-8, 산9-9, 산9-12번지선 일원
5. 점용·사용의 면적 : 3,141㎡(직접:1,893, 간접:1,248)
6. 점용·사용의 기간 : 2021. 11. 9. ~2036. 12. 31.
7. 점용·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사천시장(관광진흥과)
 - 나.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사천시 공고 제2021-1448호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재규정할 실익이 없는 현행 조례와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사천시 정보공개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1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민원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민원교통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983, FAX: 831-6094)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폐지조례안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사천시 공고 제2021-1449호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민원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민원교통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983, FAX: 831-6094)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사천시 공고 제2021-1451호

「사천시 정보공개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정보공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처리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나. 위원회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 다. 심의회회의의 운영, 심의 요청, 의견 청취 등, 간사 및 서기,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3. 의견제출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민원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민원교통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983, FAX: 831-6094)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정보공개 운영 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정보공개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천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처리부서 지정, 정보공개심의 회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청구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공개 여부 결정 및 통지 등을 처리하는 부서로 정보공개업무 추진 및 행정정보 공표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총괄부서에서 배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 공개 청구내용이 3개 이하의 처리부서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 자료의 취합 등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지원부서”란 제3호의 주관부서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지원 및 협조하여 제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처리부서 지정) ① 청구내용이 3개 이하의 부서일 경우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제순에 따라 주관부서 및 지원부서를 지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② 청구내용이 4개 이상의 부서일 경우 총괄부서에서 취합하여 처리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회의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8조(심의 요청)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정보공개 청구일 또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심의를 요구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안의 내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자를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는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 사천시정보공개심의회는 이 규칙에 따른 사천시정보공개심의회로 본다.

제3조(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 회의록

				서기	간사	위원장	결 재
일	시				장	소	
참석상황	정 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p>○ 안 건</p> <p>○ 심의사항</p> <p>○ 심의결과</p>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심의요청서

수신 : 정보공개 총괄부서장

발신 : 처리부서의 장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에 아래와 같이 심의를 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1. 정보공개청구인 (이의신청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주 소 (소재지)	
2. 공개청구내용 (이의신청내용)		
3.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내용		
4.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5. 그 밖의 사항		

- 붙임 1.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정보(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3. 처리부서 검토의견서 1부.
4. 그 밖의 증명자료 각 1부.

[별지 제3호서식]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심의안건				
심의결과				
사 유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년 월 일 </div>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건
		가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관리대장

접 수		심 의 안 건	심 의 방 법	처 리 부 서	심 의		비 고
월 일	번호				월 일	결 과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관 련 법 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12. 22.>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사천시 공고 제2021-1454호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기능을 증대하고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지급 횟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원제외 및 지원액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 천 시 공 보

제 753 호

3. 의견제출

이 제정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농축산과장)

(우편번호: 52538, 주소: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831-3761, FAX : 831-6051)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등) ①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경영주: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사천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
2. 공동경영주: 제1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사천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인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

②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 농·임업 경작지는 경상남도 내 소재한 농지·임지이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허가·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한다.

제3조(지급 횟수) 농어업인수당은 연 1회 지급한다.

제4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이·통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이·통장은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장은 읍·면·동 영농·영어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를 제출받은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제5조(의무이행) ① 신청인은 수급권자 이행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인의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에게 서면 등으로 부적합 결과를 통보하고, 14일 이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의무이행 사항 점검 결과 부적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가 완료된 즉시, 시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은 신청인의 이행사항 확인 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서 이행사항 확인 가능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지원제외 대상 및 지원액 환수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의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4.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다만, 형제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 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
5. 농어업인수당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한 시점부터 농어업인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농어업인수당 전액을 환수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③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행서약서 미작성: 미지급
2. 공익증진을 위한 의무교육 미이수: 50퍼센트 미지급
3. 공동체 활동 미참여: 50퍼센트 미지급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농어업인수당 업무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다 음 -

◇ 개인정보 수집 목적

1.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2. 농어업인수당 지급

◇ 일반정보의 수집

- 필수정보 : 성명, 주소

※ 농어업인수당 대상자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

- 선택정보: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수집은 대상자 여부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를 받는데는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대상자 선정, 심의, 수당지급시 동명이인의 구별과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농어업인수당 사업을 위해 동의해 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심의위원, 금융기관, 농어업경영체 정보(등록기간 유지여부, 공동경영주 등록여부 등) 조회를 위한 기관, 직장가입자 유무 확인을 위한 기관 등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어업인수당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목적 외 이용

-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과 관련된 교육·홍보 자료 등을 귀하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

◇ 개인정보 보유 및 폐기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거나 종이문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한 보관기관에 따라 폐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 성명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 성명 (서명)

사 천 시 공 보

제753호

관 련 법 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6. 22.>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7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경상남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단, 경상남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경상남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③ 그 밖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